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632
----------	-------

발의연월일 : 2023. 11. 28.

발 의 자 : 김상희 · 장철민 · 이탄희
 이학영 · 황운하 · 이수진^(하)
 민형배 · 이용빈 · 김종민
 홍영표 · 강민정 · 유정주
 윤영찬 · 우원식 · 이용우
 오영환 · 진선미 · 전해철
 이용선 · 김경만 · 홍기원
 김두관 · 윤건영 · 김한규
 윤준병 · 전용기 · 기동민
 허영 · 윤영덕 · 조오섭
 허종식 · 김성환 · 신정훈
 이형석 · 전재수 · 정필모
 최인호 · 맹성규 · 김한정
 허숙정 · 김의겸 · 이정문
 강준현 · 김민기 · 이원택
 조용천 · 문정복 · 이해식
 권인숙 · 강훈식 · 김영주
 이수진 · 이상현 · 이소영
 이원욱 · 임호선 · 서동용
 윤재갑 · 송재호 · 고용진
 송갑석 · 김수홍 · 이장섭
 신영대 · 인재근 · 유기홍

고영인 · 최혜영 · 민병덕
박광온 · 김민철 · 김홍걸
양이원영 · 전해숙 · 문진석
의원(7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되었음.

그러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가 심하게 훼손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 추천 비율은 지역구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그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으로써,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대비 총후보자수의 비율을 말한다)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지역구총수 대비 총후보자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9조제8항 본문 중 “위반한”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을 위반한”으로 한다.

제5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 ⑤ (생략) <u><신설></u>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대비 총후보자수의 비율을 말한다)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지역구총수 대비 총후보자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u>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생략) ⑧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録申請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受理하여야 하되, 登録申請書·政黨의 推薦書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와 本人承諾書·選舉權者의 推薦狀·寄託金 및 第4項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巡威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受理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의 被選舉權에 관한 證明書類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受理하되,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機關 또는 團體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에 回報하여야 한다.

⑨ ~ ⑮ (생략)

제52조(등록무효) ① ~ ③ (생략)

<신설>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을 위반한-----
-----.

-----.

⑨ ~ ⑮ (현행과 같음)

제52조(등록무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

④ (생 략)	<u>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u> <u>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